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116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김은지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6.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6. 17. 접수 제62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6. 2. 29. 200,000,000원, 2019. 3. 28.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B는 2021. 12. 10.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2022. 6. 15. 기준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8,719,419원, 연체이자 9,728,352원, 대지급금 1,093,530원 합계 319,541,301원의 채무가 있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17.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11. 5.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12.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23. 1. 17. 배당기일에서 실시된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이의를 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이익을 하지도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원고 또는 채무자 B에게 반환할 배당금이 전혀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소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281㎡

2. 경기도 의정부시 앞세 및 벽들조 평슬래브 지붕 4
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50.6㎡ 2층 167.2㎡ 3층 167.2㎡ 4층
146.8㎡ 지층 161.1㎡ 끝.

